산학협력단 연구교수 임용규정

제정일: 2022.10.18.
최근개정일: 2023.07.06.
주관부서: 산학협력단

제1조〔목적〕 이 규정은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〔정의〕 산학협력단의 연구교수는 국내외 타 기관에 직을 두지 않으며 정부, 정부출연기관, 비영리학술재단, 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산학협력단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구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〔임용자격〕 연구교수의 자격은 ①항 또는 ②항의 해당자로 한다.

① 박사학위이상 소지자

② 연구과제 3천만원 이상(연구참여 有경험자), 연구수주 능력이 우수한 자

제4조〔신분〕 제3조의 연구교수는 용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의 교원과는 구분하고, 산학협력단의 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다.

제5조〔임용〕 ① 연구교수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면한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교수 임용 희망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임용예정일 3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제출받아야 한다.

1. 이력서 1부.
2. 최종학위증명서 1부.
3. 경력증명서 1부.
4. 소속기관장의 추천서 1부.
5. 연구수행계획서 1부.

③ 연구교수는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임용규정에 따르고 재임용은 별도로 정한다.

④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외부기관의 연구비 지원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

⑤ 연구교수를 재임용할 경우 해당 학과 교수 및 산학협력단의 추천서로 제2항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나 연구수행계획서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〔처우〕 ① 연구교수의 보수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된 연구비로 충당한다(2023. 7. 06. 개정).

② 연구교수는 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.

③ 연구교수가 시설 공간을 교내에서 활용하고자 할 경우 통신, 전화, 건물사용료를 학교에 지불하여야 한다.

④ 정부사업 등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별도 계약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(2023. 7. 06.개정).

제7조〔역할 및 활용〕 ① 연구교수는 연구를 전담하되, 본교 강의 시 우리 대학교 외래교수위촉

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,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타교 강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, 부득이한 경우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다.

제8조〔세부사항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① **〔시행일〕**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**〔시행일〕** 이 규정은 202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